

2000년도
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사업 신청요강

2000. 3.

한국학술진흥재단

I. 사업 목적

신진교수들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

II. 기본 계획

1. 지원 예산 : 3,100백만원

2. 지원 분야 : 전 학문분야

※ 편람, 사전 편찬, 교재 개발, 번역, 전람회,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3. 지원 방향

-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신진교수 지원
- 심사의 공정성, 객관성 제고의 극대화
- 온라인 신청과 아울러 심사자 자동배정 시스템 제도를 도입
-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
 - 연구결과의 전문 학술지 게재 의무화
 -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강화
 - 연구결과의 DB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동활용서비스 제공

4. 지원 규모 및 형태

가. 지원 기준 : 과제당 1,200만원 이내

☞ 두뇌한국 21(Brain Korea 21)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연구비에 연구보조 원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, 연구비 신청 한도액의 70%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

※ 연구비 산정 기준은 【붙임】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 참조

나. 지원 기간 : 1년

다. 과제 성격 : 단독 연구

III. 공모 및 신청

1. 공모 방법

- 대학(교)의 총(학)장에게 신청요강의 발송을 통하여 공고
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공고

2. 신청 방법

-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자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술연구자 정보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신청서를 On-Line으로 직접 입력
 - ※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 연구자 정보DB를 활용하며,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, 수정한후 이를 확인하여야함.
- 지원신청서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토록 하고,
- 연구계획서는 동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장이 수합하여 일괄 신청

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: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해 직접 작성
- 연구계획서 : 6부(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소속대학 기관장을 통해 일괄 신청)

3. 신청마감

- 온라인 신청기간 : 2000. 4. 24 (월) ~ 5. 3 (수) 21:00한
- 신청과제 과제번호 부여 : 2000. 5. 4 ~ 5. 6 (재단 홈페이지 공고)
- 연구계획서 제출마감 : 2000. 5. 12 (금) 18:00한

4. 신청 자격 및 요건
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해당자중
 - 최초 임용 경력 5년 이내인 국내 대학의 소속교원(신청마감일 현재)
 - 학교의 공식절차에 의해 임용된 교원 (예: 기금교수, 연구교수 등)

5.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

가. 연구비 신청 제한

-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(교수해외과견연구비 포함)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(D급)으로 평가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C급으로 평가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

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
-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교수해외파견연구 및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강의파견 수혜자
-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1회이상 수혜 받은 연구자

나. 연구 참여 제한

- 본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음
-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, 현재수행 하고 있는 계속과제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0.12.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, 교육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- 국가주도의 대형연구사업 책임자는 동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.

(예시 : 교육부 BK21사업 단장, 과기부 창의과제, NRL, SRC, ERC, RRC 등)

☞ 교육부 BK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에 1인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
IV. 심사 및 선정

1. 심사 절차 및 내용

| 구 분 | 심 사 내 용 | 주 관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단계 요건심사 | • 신청서에 대한 행정 요건 심사 | 재단 |
| 2단계 전공심사 | •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의 명료성 • 연구 수행능력 • 연구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•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• 연구비의 적정성 | 학술연구심사평가 위원회 추천 전공심사단 |
| 3단계 종합심사 | • 2단계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• 최종 지원과제 확정 | 학술연구심사평가 위원회 |

2. 지원과제 선정

- 심사결과 고득점순위에 의하여 학문분야별로 선정
- 학문분야별 학문의 균형발전 및 형평성을 고려

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
1. 연구비 지급

가. 지급방법 : 실행예산서 접수후 소속대학(교) 총(학)장을 경유하여 지급

나. 지급시기 : 지원과제 통보에 따른 실행예산서 접수후 지원결정액 100% 지급

2. 연구비 관리

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(교)의 총(학)장이 중앙관리해야 함

단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

-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
-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
-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을 때
- 당초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
-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
VI.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

1. 중간 보고서 : 제출생략

2. 결과 보고서

-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제출자료
 - 연구결과논문 (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게재 요청된 논문) 또는 학술저서(원고)
 - * 학술지 투고접수증 첨부
 -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(연구비 사용내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 - 논문초록
- ※ 위의 자료는 한글 버전 3.0 이상으로 작성하여 E-mail(result@ms.krf.or.kr)
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

-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(공동연구원도 포함)에 대한 관리

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제출 완료시까지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(교수해외파견 연구비 포함) 지원을 제한함

3. 연구결과물

가. 발표에 대한 책무

신진교수연구과제 수혜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해야 함

나. 제출 시기

- 국내학술지 및 전문학술저서 :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
- 해외학술지 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- 연구결과 논문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하며,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수혜 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 - 국문 표기 : “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

(KRF-00-○○○○)”

-영문 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.

(KRF-00-○○○○)”

다. 연구결과 미발표자에 대한 관리

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,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부의 학술연구비 및 재단의 연구비(교수해외파견 연구비 포함)지원 신청을 제한함

4. 연구결과 사후관리

-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 -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 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-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(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)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
 - 대학 등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
 -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

- 금년부터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은 재단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급은 경고 및 3년, D급은 경고 및 5년간 연구비 지원대상 제외

VII. 기타 사항

- 심사 학문분야 코드는 재단에서 정한 학문분류표를 참고하여 1순위에 소분류 분야명 및 code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.
-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바람.

제출 및 문의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

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3팀

TEL (02)3460-5592~5 FAX (02)3460-5600

【붙임】 연구비 산정·집행 기준표

| 항 목 | 내 용 | 산정·집행기준 |
|-----------------|--|---|
| ①인건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(석·박사 과정)의 수당 | - 석사과정생은 20~40만원/월 - 박사과정생은 30~60만원/월 |
| ②연구 활동 경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| - 월 15만원 이내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, 세미나 개최, 국내외 정보D/B 네트워크(DNS)사용료, 해외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 등 | -실제 소요액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, 현지교통비,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| -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, 인원,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-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, 자료수집 등 필요한만큼 인정 (왕복항공료와 1개월이내 체재비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조사지 인쇄, OHP 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| -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.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보험금, 각종 수수료(특허출원비 등) | |
| ③직접성 경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논문게재료 | -실제 소요액 (교육부 및 재단연구비와 관련된 논문의 발표에 한함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료 및 문헌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, 기구, 소모성재료,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| 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비사용료(임차료)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기기)의 사용료,분석료,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사용료) | -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기자재 | -품목,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-실제 소요액 |

※ ②항목은 국외여비를 제외하고 300만원 이내, 국외여비가 포함되는 경우 400만원 이내만 인정

양식 #1 >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※접수번호 | On-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 |
|--------------|---|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※과제번호 | On-line신청마감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 |
|--------------|---|

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계획서

(사업명 :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사업)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연구과제명 | 국문 | | |
| | 영문 | | |
| 연구책임자 | 성명 : _____ (인)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소속 : _____ | | |

※ 연구계획서 6부중 겹표지(본 페이지)는 1부만 붙이고, 나머지 5부는 겹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※접수번호 | On-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 |
|--------------|--|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※과제번호 | On-line신청마감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|
|--------------|--|

I . 연구과제명

국문 :

영문:

II . 연구내용계획

☞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형식, 길이,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. 아울러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는 삼가 주십시오..

1. 연구목적 (필요성)
2. 연구내용, 범위 및 방법
3. 기타사항 (해당사항만 기재할 것)
 - 국내·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
 -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
 -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
4. 참고문헌

III. 연구수행계획

1. 신청연구비

가. 소요예산 총괄

| 구 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|-----|-----|
| 재단 신청액 | 천원 | |
| 자비 및 기타 | 천원 | |

※ 온라인 신청시 작성한 연구비와 동일하여야 합니다.

나. 신청연구비 산출내역 (1차년도)

| 항 목 | | 금 액 | 산 출 기 초 (단위 : 원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인 건 비 | 연구보조원 수당 | 천원 | |
| 연구활동 경비 | 연구활동비 | 천원 | |
| | 연구회의비 | 천원 | |
| | 여 비 | 천원 | |
| | 유인물비(인쇄비,수용비) | 천원 | |
| | 공공요금 등 잡비 | 천원 | |
| 직접성 경비 | 논문 게재료 | 천원 | |
| | 자료 및 문헌비 / 출판비 | 천원 | |
| | 장비사용료(임차료) | 천원 | |
| | 연구기기비 | 천원 | |
| 계 | | 천원 | |

※ 재단신청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

※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공모요강의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.

(추산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음)

2.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

☞ 본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게재를 희망하는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를 4종 이상을 국내·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.

- 국내

| 학 술 지 명 | 발 행 기 관 |
|---------|---------|
| | |

- 국외

| 학 술 지 명 | 발행국가 | 발 행 기 관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| | |